

##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년 5월 전반부)

May 17, 2024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2024년 5월 전반부의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한 공정거래 소식지를 준비하여 보내드립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년 5월 전반부)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a href="#">공정위, 민생 안정을 위해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a>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슈)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li><li>• (주요내용) 공정위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함</li></ul>
<a href="#">공정위, 웹소설 상생협약식 개최</a>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슈) 웹소설 상생협약식 개최</li><li>• (주요내용)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상생협의체 합의를 결실로 창작사,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li></ul>
<a href="#">공정위,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a>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슈)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지자체 조례·규칙 개선</li><li>•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들을 개선함</li></ul>
<a href="#">공정위,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a>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슈)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li><li>•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함</li></ul>

이슈	주요 내용
<p><b>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 5.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동일인 판단기준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li> <li>• (주요내용)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li> </ul>
<p><b>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 체결</b> 5.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 체결</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함</li> </ul>
<p><b>공정위, 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b> 5.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고, 그 중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였음</li> </ul>
<p><b>II. 주요 소식</b></p>	
<p><b>공정위원장, 민생 안정을 위한 공정위 역할 강조</b> 5.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한기정 공정위원장, 민생 안정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강조</li> <li>• (주요내용)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물가 상황을 고려하여, 민생 안정 차원에서 공정위가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li> </ul>
<p><b>III. 국회 발의법안</b></p>	
<p><b>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이인선 의원안) 국회제출</b> 5.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li> <li>• (주요내용)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이인선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li> </ul>

#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년 5월 전반부)

## I. 보도자료

### 1. 공정위, 민생 안정을 위해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4. 30.)

- 공정위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i)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ii)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 분석·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공정위는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임. 또한,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임
  - 공정위는 5월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공정위 누리집에 개설·운영하여, 누구든지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는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하여,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하였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 기능 강화)**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어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를 분석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함
  - 제빵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현황, 거래구조, 가격상승 요인 등을 분석하여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규제·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임. 또한, 주류 분야의 경우 ‘주류 경쟁력 강화 전담팀’에 적극 참여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2. 공정위, 웹소설 상생협약식 개최 (4. 30.)

-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창작사,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함
  - 상생협의체에서는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대상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발급 중단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게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 다루어 왔음
  -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산업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임

### 3. 공정위,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 (5. 1.)

- 공정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진입제한 38건, 사업자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저해 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함
  - **(진입제한 규제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번호 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함.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함
  - **(사업자 차별 규제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었음. 이로 인해 다른 지역 건설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건설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공사비가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함
  - **(사업활동제한 규제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 주체의 시설 전대(재임대)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두고 있었음. 이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함
  - **(소비자권익 저해 규제 관련)**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의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전국 지자체에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료 전액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조치함

### 4. 공정위,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5. 3.)

- 공정위는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함
-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함
  -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출고가 기준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음)
-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5.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 7.)

-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 5. 7. 국무회의를 통과함(2024. 5. 10. 시행)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으로, (i)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ii)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iii)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iv)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v)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함
  -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함

## 6.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 체결 (5. 13.)**

-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이하 자율협약)을 체결함. 해외직구 규모가 확대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함
  -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는 기존에 자율협약 체결)
- 해당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및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바,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 등은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판매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함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제품안전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②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③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④ 정부 등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⑤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을 신속히 삭제하고, 이행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 ⑥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⑦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 7. **공정위,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5. 15.)**

- 공정위는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고, 그 중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였음.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하였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44개 증가하였음

-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하였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기존 10조 원)이 금년부터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음
  -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의 성장, 그리고 회계기준 변경(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음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2024. 5. 10. 시행),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024. 1. 1. 시행)이 처음 적용되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위 5번 참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였음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2023. 12. 21.)에서는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영구적으로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이러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여러 기업집단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이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었음

## II. 주요 소식

### 1. 공정위원장, 민생 안정을 위한 공정위 역할 강조 (5. 1.)

-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물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민생 안정 차원에서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함. 덧붙여, 공정위가 물가관리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므로 공정위를 물가당국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국민과 언론에 잘 설명해줄 것을 당부함
-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경쟁당국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행태가 경험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공정위가 모니터링 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함

## III. 국회 발의법안

###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인선 의원안) 국회 제출 (5. 7.)

-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이인선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기본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앱마켓사업자가 자신의 기본 운영체제 내에서 다른 앱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